

## ◎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-206호

「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0일

기획재정부장관

「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'21.12.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.

### 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(월)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(참조 : 산업관세과장, 전화 044-215-4433, 팩스 044-215-8076, 이메일 [kimsungchae@korea.kr](mailto:kimsungchae@korea.kr)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
- 전화: 044-215-4433
- 팩스: 044-215-8076
- 이메일: [kimsungchae@korea.kr](mailto:kimsungchae@korea.kr)

※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[www.moef.go.kr](http://www.moef.go.kr))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